경제혁신 3개년계획 —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2월 29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과장 김영규(044-203-5321), 김혜원 사무관(5349)

원전 관리 · 감독, 한층 더 체계적으로!

- **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, 산업부에 원전 안전운영 및 비리예방을 위한 투명경영 관련 첫 운영계획 보고서 제출**
- **기관의 '15년 윤리감사 결과, 비리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직원 재산등록 ·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준수 중으로 확인**
- **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 · 점검할 계획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**한수원 등 5개 원전공공기관***이 **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비리 예방을 위한 투명경영** 관련 2년간('16~'17년)의 **운영계획**을 수립하여 **2.29(월) 산업부에 제출**했다고 밝혔다.

* 한수원, 한전KPS, 한전기술, 한전연료, 한전

○ 이번 '**운영계획**'은 **「원전감독법*」 시행('15.7) 이후 원전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·제출한 보고서**로,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기관의 『**종합이행계획**』이라고 할 수 있다.

* 「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」

○ **기관은** 앞으로 **품질서류 위·변조 검증**절차 마련, **사이버 보안 강화** 등 정부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**운영계획에 따라 이행**하게 되며,

○ **산업부**는 '운영계획'을 통해 **기관의 의무 이행 계획을 한 눈에 파악**하고, **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**할 계획이다.

< 운영계획 보고서 개요 >

- **수립·제출:** 원전공공기관은 2년마다 2년간의 운영계획 수립, 격년 2월말 산업부 제출(기관 이사회 보고 필요)
- **구성:** 개요 및 세부 계획(①구매·계약, ②조직·인사, ③원전시설 관리, ④국민소통·참여 관련 이행계획 및 성과지표), 이행·점검 및 피드백 계획 등

□ 기관이 수립한 **운영계획의 주요 내용**으로는,

○ **한수원**은 **원전 품질 향상**을 위해 **공급사**에 **1:1 품질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**하고('16년 21개사, '17년 23개사),

- **원전 계획예방정비** 전 분야(공정, 작업관리, 산업안전, 시험/작업 리스크, 인력관리 등)에 대해 **통합 관리센터 운영**을 통해 **안전성을 강화**한다.

○ 또한, **한전KPS**는 **원전 정비역량 제고**를 위해 **'16년 신규과제**로 사업소별 정비절차서를 비교·검토하고 정비 경험 및 사례를 반영한 **정비절차서 개정('16년 800건 목표)을 추진**한다.

□ **산업부**는 원전공공기관이 제출한 **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** 등을 구매·계약, 조직, 안전 등 **관련 전문가와 함께 심층 검토**하여 **보완·확정**하고, 법에 따라 **원안위에 통보**하고 **국회에 보고**할 계획이며,

○ 앞으로 기관의 운영계획 이행 현황을 **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·관리**하여 **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**원전공공기관**이 '15년 시행한 **윤리감사** 보고서*를 **2.29(월) 제출**했으며, **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* 「원전감독법」 제19조에 따른 ①윤리행동강령 제정·이행, ②임직원 재산등록·취업제한, ③부당한 정보제공·이용금지, ④영리업무 금지, ⑤협력업체 제재조치 관련 감사결과

○ 기관의 **윤리감사 결과**, 각 기관은 **관련 법령을 준수**하여 **임직원 재산등록·퇴직자 취업제한** 등을 시행중이며,

○ 「원전감독법」에 따른 협력업체 제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김혜원 사무관(☎ 044-203-53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29 10:38:40

별첨1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 주요 내용

※ 기관 운영계획은 관련 전문가 검토·보완 후 확정될 계획

□ 운영계획 주요내용 (예시)

분 야	주요내용
원전 안전 및 품질 관리	• **[全 기관]** 품질서류 위·변조 검증절차 마련 및 점검 • **[한수원]** 공급사에 1:1 품질전문가 멘토링 확대 시행 및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'발전운영 종합센터' 구축·운영(경주본사) • **[한전KPS]** 원전 정비절차서 개정('16년 신규 추진, 800건 계획) - 사업소별 동일노형/동일설비에 대한 절차서 비교/검토 및 미개발 절차서 신규개발, 정비 경험·사례 반영한 절차서 개정 등 추진 • **[한전기술]** 원전 안전기기 검증시험 100% 참관 및 기기검증보고서 검토결과 정보 공개(분기별) • **[한전연료]** 공급자 품질서류 관리시스템 개발('16~)
구매·계약 투명성 강화	• **[全 기관]** 구매·계약 정보 투명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등 • **[한수원]** 신규업체 진입장벽 제거 및 원전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매규격서 사전검증절차 운영 • **[한전KPS·한전기술]** 구매규격 사전공개(한전KPS, 한전기술), 발주정보 통합공개(한전KPS) '16년 시행 • **[한전]** 외자구매 전자입찰시스템 신규 구축 및 구매이력 통합관리('16.4 예정)
사이버 보안	• **[全 기관]** 원전 사이버보안 및 협력회사 정보보안 강화 • **[한수원]** 협력회사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통한 자료유출 통제 • **[한전연료]**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('16.9) 및 협력업체 보안교육 신설 운영
국민 소통	• **[全 기관]** 적극적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• **[한수원]** 원전별 지역소통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소통 강화

□ 기관 이행계획

○ 주기적(반기별) 운영계획 대비 실적 점검, 계획 대비 미진한 사항에 대한 사유 분석 및 대안 마련 등

별첨2 「원전감독법」 주요 내용

「원전감독법」 주요내용

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안전·투명 경영의무 부과

< 안전·투명 경영의무 주요내용 >

- **(구매·계약)** 수의계약 최소화, 부정당 업체 제재, 구매정보 사전공개 강화 등
- **(조직·인사)** 주기적 조직 건전성 진단·개선,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
- **(설비관리*)** 정비과정 투명성 확보, 정비업체 감독강화, 설비투자 계획 수립 등
- **(소통·참여)** 건설·운영 관련 정보공개, 주민참여제도 운영

* 설비관리는 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(한수원)만 적용

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

○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행위제한과 제재 조치를 규정

< 주요 행위제한 및 제재 >

구 분	법률상 행위제한	벌 칙
원전 공공기관 종사자	·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·취업제한 적용	「공직자윤리법」적용 (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)
	· 사익·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	최대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등
	· 영리업무 겸직, 관련 협력체 투자 금지	징계의결 요구 의무화
	· 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등 가중처벌	형법의 1/2까지 가중처벌
협력업체	· 뇌물수뢰, 서류 위변조, 퇴직자 고용, 부정한 정보 취득·이용 금지	①원전공공기관 입찰제한 ②과징금·가산금 ③형벌(징역, 벌금)

□ 안전·투명 경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·감독 규정

○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법률상 책무 준수 여부를 산업부가 관리·감독하고, 미흡시에는 시정·개선조치

* 관리·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·자료요구,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조정 요구, 시정 미이행시 인사조치·기관장 해임건의 요구 등 규정

○ 산업부는 이행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원안위에 통보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29 10:38:40

「원전감독법」 시행령 주요내용

□ 원전감독법 시행령 주요내용

○ **(관련사업자)** 한전 및 기타공공기관*, 협력업체

* 해당기관: 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연료

○ **(원전공공기관 의무)** 품질·시설관리,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명시, 공통의 경영목표·운영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규정

- **(품질·시설관리)** 품질문서 위·변조 검증, 원전시설 정비역량 제고, 사이버위협 보안계획 수립 등

- **(재산등록)** 「공직자윤리법」상 원전공공기관 재산등록 의무자*를 동 시행령에 반영

 * 한수원, 한전기술, 한전연료 및 원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전KPS 조직의 2급 이상 직원

- **(이행계획 수립)** 안전·투명한 원전 건설·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공토 시 경영목표·운영계획의 수립 절차·제출일 등 세부사항 규정

○ **(협력업체 제재)** 뇌물공여, 성능문서 위·변조,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침해·자료유출 등에 대한 입찰제한·과징금 등 기준 명시

- **(입찰제한)** 원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·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제한 가능

- **(과징금·가산금)** 위반행위 사안의 중요도 및 체납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설정

 *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(위반행위로 얻은 이익)의 2/100~10/100 범위로 설정, 위반행위에 따라 조정 가능

○ **(관리·감독)**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